

# 생명관리정치에서 죽음관리정치로

-존엄사의 현행법에 대한 문제화-

김 분 선\*

**주제분류** 윤리학, 응용 윤리

**주요어** 존엄사, 죽어감, 안락사, 미학적 안락사, 생명관리정치, 연명의료결정법

**요약문**

이 논문은 존엄사에 대한 개념적인 문제들이 가지는 윤리적 문제들을 고찰하고 존엄사법의 법률 제정과 개정에 은폐된 문제들을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논점에서 재조명한다. 또 이 논문은 존엄사법의 개정 절차를 분석하여 존엄사법이 윤리적 입장이 아니라 실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에 다가서고자 안락사의 주된 개념을 살피고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석한다. 이에 기반하여 존엄사법의 제정과 개정의 과정을 분석하고 미학적 안락사의 논의에 기대어 존엄사법의 문제점들을 구체화한다. 이로부터 이 논문은 존엄사법의 궁극적인 문제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존속을 위한 자유 생산의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음을 보이고 죽어감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위해 숙고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규명할 것이다.

---

\* 중앙대학교

## 1. 시작하며

2019년 죽음에 관한 논의 중 가장 큰 보도 지면을 차지했던 것은 ‘연명치료’에 관한 내용이었다. 2016년 일명 ‘존엄사법’이라 불리는 연명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의향서를 작성하고 나온 사람들과 노인들의 모습이 각종 포털게시판에 등장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나의 존엄한 죽음이 보장되는 것처럼 모든 언론은 떠들썩하게 연일 보도를 이어갔다.

나는 죽어가는 자에게 존엄한 죽음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다. 존엄한 죽음이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자에게 존엄한 것인가? 그 죽음을 함께 맞이할 자들에게 존엄한 것인가? 만일 편안한 죽음이 존엄한 죽음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막연한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나의 생명을 담보로 잡히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또 사회적으로 구축된 존엄한 죽음에 대한 환상이 우리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썼을 때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다고 속삭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글은 이러한 문제를 드러내고 문제화하고자 다소 지나치게 비판적인 접근을 시도하려 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법의 제정단계에서 ‘존엄사’에 대한 법적 해석을 중심으로 제정과 개정의 과정을 거쳐왔다. 이렇게 보았을 때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다루는 윤리적인 논의는 존엄사에 대한 윤리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무엇을 존엄사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따라 실제로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포함된 개념들을 확인할 수 있고 언론과 법적 논쟁에서 활용되고 있는 존엄사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sup>1)</sup>

---

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라

이를 위해 이 글은 우선 철학적, 윤리적 논의에서 다루었던 죽음이 무엇인지를 일차적으로 규명하고 안락사와 존엄사, 미학적 존엄사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이를 기반으로 현행법 즉,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정을 살피고 이를 미셸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논점에 기반하여 다시 논의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 논의는 연명의료중단의 문제가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는지에 대한 문제화를 통해 죽음에 대한 현행법의 이면에 존재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다.

## 2. 죽음(death)의 논의에서 죽어감(dying)의 논의로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자들은 죽음에 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그런데 죽음에 관한 논의는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보다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죽음을 어떤 논점으로 보아야 하는 가에

---

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언론에서 사용하는 존엄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전문적이지 않다는 심사위원의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은 중요한 문제를 내포한다. 미처 필자가 생각하지 못한 지점을 세심하게 점검해주신 데 감사함을 전하면서 개념적 문제를 선명하게 하고자 한다. 현행법의 공식 명칭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중립적 의미의 법제를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법이 제정되게 된 절차들을 보면 2008년과 2009년에 있었던 일명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의 판례에서 등장한다. 2009년 대법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대법원, 2009다17417, 2009.5.21.]을 근거 삼아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표명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는 사회적으로 소위 ‘존엄사’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켰다. 존엄사라는 표현이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논의를 법적 논쟁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점 때문이다. 또 법적인 논쟁의 핵심이 되는 생명권과 자기 결정권의 문제는 인간 존엄의 전제 조건에 죽음에 대한 선택권을 포함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존엄사라는 표현에 함의된 내적 의미는 윤리적 논의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이 논문은 공식 명칭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이에 내포된 의미를 부각하려는 부분에서는 ‘존엄사’라는 약칭을 활용할 것이다.

관한 언급이었다. 그런데 죽음의 논의는 시대 변천에 따라 철학적 논점이 전환되어 간다. 고대 철학에서 죽음의 논의는 죽는 대상이 될 인간에게 던져진 운명적 의미를 전제로 하였다면 현재 우리가 논의하는 죽음은 죽어가는 과정 즉, 죽어감(dying)의 의미를 파악하고 더 나은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죽음의 논의를 운명과 같은 사적인 경험에 구속하지 않고 공동체의 문제로 전환하여 죽음의 논의 범주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선 문제들을 고려하여 죽음에 대한 논점이 어떻게 전환되었고 현대적 의미에서 죽음은 무엇을 문제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플라톤에게 죽음은 궁극적 정신의 세계로 향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 사건이다. 왜냐하면, 죽음은 육체라는 정신의 감옥에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제공하는 사건이기에<sup>2)</sup> 죽음은 영혼 해방의 의미만 있을 뿐 육체적 상실의 문제가 발생시키는 현실적 문제들은 무의미하다. ‘철학자’, 즉 ‘애(愛)지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뿐더러 철학은 ‘죽음의 연습’이라고 까지 말한다.<sup>3)</sup> 이러한 관점은 기독교의 이원론과도 흡사한 측면이 있다. 죽음이 현세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의미가 아니라 영속된 삶의 시작을 의미하고 이때 자연적 죽음의 의미는 인간 불멸의 의미로 전환된다.

에피쿠로스에게 있어 죽음은 무(無)이다. 에피쿠로스는 영혼에 관한 논점은 플라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영혼 지속의 문제는 다르게 보았다. 사후에 영혼은 몸과 같이 상실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sup>4)</sup> 쾌락주의적 관점에서 죽음은 쾌가 0에 소급되는 상태이기에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이는 죽음이나 자살에 윤리적 의미를 덧씌우지는 않아야 하는 이유가 된다. 죽는다는 것은 원소로 되돌아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음 자체에 의미는 상실의 의미로 제한된다. 스토아 학파의 경우 죽음은 완전한 정신

2) 플라톤(2003), 『파이돈』, 을유 문화사, 82e ~ 84b, 148-150쪽 참조.

3) 플라톤, 『파이돈』, 80e ~ 82b, 145-147쪽 참조.

4) 앤소니 A. 룡(2000), 『헬레니즘 철학』, 서광사, 110-120쪽 참조.

적 경지와 맞닿아 있다. 스토아 학파에게 죽음은 삶이라는 숙제를 완수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세네카는 죽음을 인간에게 주어진 본연의 숙명이라 본다.

“우리 모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노년 혹은 기울어진 사람들만이 죽음에 다가가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갓난아이도, 소년도, 모든 연령대에서 우리는 이미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운명은 주어진 임무를 행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죽음이 더욱 쉽게 우리에게 잠입할 수 있도록, 죽음을 삶이라는 이름으로 숨겨 놓았습니다. 유년은 소년이 되고, 소년은 청년이 되며, 청년은 노년이 됩니다. 삶을 보태는 일은, 찬찬히 따져보면 삶을 잃는 일입니다.”<sup>5)</sup>

세네카는 죽음을 철저히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전체 세계에 대한 이성적 해안을 갖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생만큼 사람을 속이는 것도 없으며 사람을 배신하는 것도 없습니다. 맹세컨대, 이 점을 몰랐던 이들이 아니라면 누구도 삶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때, 제 생각에 차선은 짧은 인생으로 삶을 마치고 서둘러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sup>6)</sup>

근대철학으로 넘어와서 죽음은 이분법적 세계관을 따르는 전통의 관점을 고수한다. 이성을 강조하고 육체에 대해 영혼의 우위를 강조하여 죽음 문제의 본질을 사후 영혼론<sup>7)</sup>으로 확장하기도 한다. 세계대전을 겪으며 실존철학은 영혼론의 관점과는 다른 의미에서 죽음의 문제에 접근한다.

실존철학이 죽음에 대해 보여주는 태도는 인간 존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는 열쇠를 죽음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는 판단이 전체

5) 세네카(2019), 『세네카의 대화: 인생에 관하여』, 까치, 205쪽.

6) 세네카, 『세네카의 대화, 인생에 관하여』, 206쪽.

7) 박영선(2007), 「웰링의 인간학과 사후 영혼론」, 『철학탐구』 제21집, 중앙철학연구소 참조.

되어 있다. 이때 죽음은 생의 문제와 다르지 않다. 실존철학에서 보이는 삶과 죽음을 동일화하는 관점은 죽음의 문제를 살 권리에 대한 물음으로 전환한다. 실존철학에서 보여주는 죽음에 관한 고찰은 까뮈의 문제의식으로 대표된다. “한 인간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가지는 애착에는 이 세상의 모든 비참보다도 더 강한 그 무엇이 있다. ... 나날이 조금씩 더 죽음을 향하여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이 경주에서 육체는 돌이킬 수 없는 전진의 길에 들어서 있는 것이다.”<sup>8)</sup> 삶의 부조리는 죽음과 맞서는 태도를 요청하며 부조리한 삶의 저항을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통해 그 해답을 찾는다.

그런데 죽음에 관한 이러한 질문들은 현대 사회가 안정된 질서 체계로 접어들고 의료 시스템을 통해 생명 연장의 방식이 공식화되면서 점차 다른 양상을 보인다.<sup>9)</sup> 죽음을 인간의 종국에 맞이할 운명, 피할 수 없는 문제 그 자체로 이해하고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과정과 절차의 문제들을 논의하면서 죽을 권리에 관한 논의로 전환된다. 또 죽음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요청하는 상황으로 진전되면서 죽음은 더는 사적 영역과 운명에 종속되지 않는 문제가 된다. “절차화 된 그리고 프로토콜화 죽음”은 20세기의 죽음에 관한 논의가 변화되었음을 잘 보여준다.<sup>10)</sup> 안락사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배경으로 출발하였고, 죽음의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의 과정에 포함된 논쟁들을 집약적으로 담아내는

8) 엘베르 까뮈(2009), 『시지프 신화』, 책세상, 21쪽.

9) 임미원은 자연사의 개념이 시민사회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자연사 개념은 자연적인 죽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병원에서 맞는 죽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논한다. 이는 시민사회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고 좋은 죽음은 대중적 보건 위생이 안정화되기 전에는 “존중받을 만한 삶의 종결”이라는 관념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상적인 죽음에서 시민계급의 의료에 대한 이상을 실현하는 개념으로 자연사의 관념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임미원(2008), 「안락사 문제의 법철학적 고찰」, 『윤리연구』 71, 한국윤리학회, 180쪽 참조.

10) Andrew Cooper(2016), “a Good death?”,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Vol. 30, 124쪽.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죽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욕구는 생명의 신성성 윤리에서 등을 돌리게 했다. 치료의 ‘특수한 수단’을 거부할 권리, 또는 고통을 완화 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그러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예견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물핀과 같은 약물을 사용할 권리와 같은 ‘환자의 자율’이라는 특권은 생명의 신성성 윤리 체계 속에서는 만족 될 수 없었을 것이다.”<sup>11)</sup> ‘좋은 죽음’<sup>12)</sup>에 관한 논의는 극단적 상황에서 불운하게 맞부딪치는 죽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모두가 겪어야 할 자연적 죽음에 관한 논의로까지 진전한다. 이런 논의는 ‘삶의 질’에 관한 논의의 틀을 똑같이 ‘죽음의 질’로 대처하여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대에서 논하는 죽음의 문제는 죽음(death)에 대한 물음에서 죽어감(dying)에 대한 물음으로 논의의 영역을 확장하였고, 종결된 삶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종결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죽음에 대한 논의가 죽음의 정의와 의미를 파악하려는 형이상학적이고도 철학적 논의였다면 죽어감에 관한 논의는 죽어가는 과정에 포함되는 일련의 사회적, 윤리적 문제들, 개별자와 공동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 3. 죽음의 윤리적 문제

죽음에 관한 논쟁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문제는 죽음과 악에 관한 논의이다. 죽음이 악이라는 입장의 논의는 죽음이 윤리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한다. 또 죽음이 선악의 문제로 판명될 수 있

11) 피터싱어(2003), 『삶과 죽음』, 철학과 현실사, 186쪽.

12) Bethne Hart, Peter Sainsbury(1998), Stephanie Short, "whose dying? A sociological critique of the 'good death'", *Mortality* Vol. 3, No. 1 참조.

는가에 따라 죽음에 대한 윤리적 관점을 찾을 뿐만 아니라 평가적 요소들을 검토할 수 있다. 죽음의 문제는 철학의 역사에서 악의 문제로 치부되어왔다. 죽음을 악의 관점으로 조망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삶의 권리와 누림을 ‘상실(loss)’이나 ‘파괴(deprive)’의 관점으로 자각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삶에 대한 선이 무엇인가로부터 죽음에 대한 악이 무엇인가로 전환하려면, 이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 실질적으로, 그들의 세부적인 문제들은 이려한데, 그들의 인생에서 욕망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그러한 상태들, 조건들 혹은 일종의 활동 같은 것이다. 존재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행함이고,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고려하는 선이다. 그러나 만일 죽음이 악이라면, 죽음의 존재의 상태보다, 혹은 부존재, 혹은 무의식보다 그것은 생의 상실(loss of life)이기에 불쾌한 것이다.”<sup>13)</sup> 여기서 우리는 상실과 파괴가 갖는 미세한 의미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상실은 어떤 대상이 내가 소유한 ‘일종의 권리’를 소멸하는 행위로 결과적으로 주체의 권리를 상실하게 만든다. 그런 이유에서 권리는 스스로 상실될 수 없고 오직 소멸당한다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이에 반해 파괴는 온전한 것을 결여의 상태로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죽음에 대한 이 두 논점은 후에 논의될 문제를 위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1) 권리의 상실인 죽음에 관하여

상실이 죽음의 문제에서 악의 원인인 이유는 죽음의 결과에 대한 평가적 문제와 연관이 있다. 삶을 소실당한 주체에게는 삶을 통해 얻었던 모든 권리가 상실된다. 죽음이라는 사건은 생의 권리를 상실하면서, 그가 가진 다른 모든 권리들을 소멸시킨다. 이는 자연적인 죽음이라는 불가항

---

13) T. Nagel(1979), *Mortal questions, Mortal Questions*, Cambridge Univ, 3쪽.

력적인 사건을 제외한 다른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윤리적 태도의 근거이기도 하다. 그런데 헬레니즘 철학의 논점처럼 죽음을 이론적 차원이나 메타적 의미에서 파악하지 않고 단지 삶의 주체가 겪는 경험적 사건으로 파악했을 때 그 경험은 상술 불가능하고 상실 자체에 대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애초에 주어진 주체의 권리의 문제와는 무관하다.

“근심이나 고통이 어떤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면, 그에게 나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점에 그 사람이 존재해야 한다. 죽음이 이 사람을 제거하여, 더 많은 불행을 더 겪을 수도 있을 인간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기에, 죽을 때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으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인간은 근심도 겪을 수 없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sup>14)</sup>

전통적으로 이어졌던 죽음에 관한 논점을 토마스 네이글(Thomas Nagel)은 「죽음」에서 그 의미를 논리적으로 정리한다. “죽음의 경우 특별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수반되는 불행이 모두 그 주체에게 할당되는 것이다. 그것의 주체가 누구이고 그가 그것을 언제 견뎌냈는가 둘 다 의심한다. 어떤 사람이 존재하는 한, 그가 아직 죽지 않았을 한, 그는 한번은 죽음을 경험할 것이고,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일 때 더는 시간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만일 그것이 불운이라면, 그것은 불운한 주체에게 귀속 되어질 것이다.”<sup>15)</sup> 이러한 주장은 쾌락주의적 전통에서 죽음을 보는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죽음은 발생하는 ‘사건’을 통해서만 마주할 수 있다. 죽음이라는 사건의 발생 후엔 권한이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의 권리상실은 오히려 정당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때의 죽음은 명시적 의미에서의 죽음(death)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다음의 주장은 죽음을 여전히 악의 문제 안으로 포섭하

14) 앤소니 A. 룡, 『헬레니즘 철학』, 111쪽 재인용, 루크레티우스, iii 861~868.

15) T. Nagel, *Mortal questions*, 4쪽.

려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의 탄생 이전의 시간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의 시간 둘 다 그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의 시간은 그에게 그의 죽음이 앗아간 그러한 시간이다. 그것은 그가 그때 죽지 않았었다라면 그가 살아 있었다라면 있을 시간이다. 그러므로 어떤 죽음이라도 몇몇 삶의 상실을 수반하는데 그것의 희생은 그 지점에서 혹은 그것보다 더 빠른 지점에서 그가 죽지 않았으면 도모했었을 것이다.”<sup>16)</sup>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주장은 ‘죽지 않았으면 누렸을 법한 삶의 가능성’에 관하여 논의를 확장하고 있고 그것에 관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장은 언뜻 보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생각할 법한 가능성을 통해서 실질적 권리의 문제를 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죽지 않았다면 여전히 지속했을 권리는 죽음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한 권리이다. 그러나 죽음을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 세계에 포함된 사건으로 이해한다면 종결되는 삶의 문제는 마땅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그러한 사건일 것이다. 불멸하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어쩌면 인간의 역사에서 확인된 가장 확실한 사실 중 하나이다. 그런데 만일 죽음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발생할 상황을 가정하여 오로지 그 가능성에 기대어 그것을 근거로 죽음의 문제를 해석하는 것은 왜인가? 내가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죽음(death)에 은폐된 죽어감(dying)의 문제이다.

죽음이라는 일련의 사건은 우리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건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입시나 취업, 결혼이나 육아, 노역이나 휴가와 같은 삶의 경험과 죽음의 경험은 다르다. 죽음은 생애에서 단 한 번의 경험만을 허용하고 나의 의지를 통해 동일한 사건을

---

16) T. Nagel, *Mortal questions*, 7쪽.

반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들과 다르다. 또 죽음을 함께 경험하는 가족이나 연인 혹은 공동체의 간접 경험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죽음은 공동의 사건이다. 아마도 죽음은 죽는 자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최후의 경험을 제공하지만, 죽음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타인의 삶의 전반에 동참할 수 있는 신비한 이해의 물고를 열어주기에 상호 이해의 새로운 관점을 유발한다.

이렇게 볼 때 죽음은 죽은 자만의 경험으로 종속될 수 없고 죽음이라는 사건에 관계하는 자들까지 죽음의 경험에 포섭한다는 점에서 죽은 자의 상실이 죽은 자의 삶을 상실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즉, 죽은 자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무수한 가능성을 박탈당한 동참자들의 문제로 확장하여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경험을 통해 상실한 주체는 죽은 자이지만 상실하는 삶으로 인해 상실을 경험해야 하는 사람은 여전히 살아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논점에서 죽음은 무(無)로 돌아가는 자연적 상태가 아니라면 죽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감(dying)으로 존재할 뿐이다.

## 2) 생의 파괴인 죽음에 관하여

파괴는 완전한 것 혹은 온전한 것을 부수거나 깨뜨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파괴’에 관한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이 온전한 것에 대한 파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파괴’라는 용어 자체는 악의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오로지 삶의 온전성에 대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온전한 삶을 파괴하는 것은 악의 문제로 치부되지만 온전하지 않은 삶이 파괴되는 것을 악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 행복이나 쾌락의 차원에서의 온전함인지 인간 권리나 권위의 온전함인지 역시 구별해야 한다.

“죽음(나의 죽음)은 나쁘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치에 관한 건축의 구조물을 종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개인적인 가치 항목들 혹은 가치 단위들의 부분이 아니라, 상호 조화로운 혹은 상호 의존적인 역동성이고, 통시적으로는 가치 소재가 유지되고, 삶을 진행하는 궤도 안에서 개인으로 존재하는 부분이다. 만약 어떠한 것도 가치를 갖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것이라도 부정적 가치를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러한 것으로 종결된다. 왜인가? - 왜냐하면, 그것은 역동적 가치 건축의 완성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구조인지 아닌지와 같은 열린 질문은 전체로서 그 사람의 인생, 누적되고 풍부한 경험의 계획으로서 완성될 것이다. 어떤 이의 삶이 종결되는 어떤 경우라도 이 윤리적 그리고 미학적 가치의 역동적 소재는 파괴된다.”<sup>17)</sup>

이 인용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파괴에 관한 논점에 핵심은 죽음을 ‘가치라는 구조물의 종결’로 보는 것이다. 죽음이 우리가 삶 속에서 얻게 되는 윤리적이고 가치적인 모든 누적의 구성물을 파괴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죽음(death) 자체가 아니라 죽어감(dying)을 통해 삶의 구성물을 해체하는 상황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타인의 죽음을 통해 그 사람의 생을 비추어보기에 그가 이룩한 건축물의 상실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한다. 물론 삶이 악으로 점철된 건축이었다면 그의 죽음은 다른 악을 양산할 가능성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악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의 죽음을 볼 때 우리는 그가 쌓은 삶의 악 됨을 비난하는 것이지 그 삶이 파괴되는 것을 기쁨으로 동참하지는 않는다. 이는 악인의 삶도 복합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그가 하나의 생명으로 선행을 행할 수 없었던 복합적 요인들에 대한 고려를 앞서 할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파괴에 관한 또 하나의 관점은 욕구 실현의 가능성을 파괴한다는 점이

---

17) Peter Lotson(1998), "The antinomy of Death", *Death and philosophy*, Routledge London and NewYork, 149쪽.

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를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종결된 열망들 그리고 희망들로서 죽음에 대한 사실은 인생을 구성한다 ...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 가족, 공동체, 문화에게 특별한 그러한 욕망에 대한 좌절로 각자 그리고 모두의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항상, 심지어 99살 일 경우조차 삶을 종료하는 것은 ‘짧다.’”<sup>18)</sup> 그런데 더 나아가 욕구를 살아있는 동안 실현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인가를 욕구한다면, 다른 사정이 동일한 한, 나는 욕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태를 그렇지 못한 상태보다, 그리고 (역시 다른 사정이 동일한 한) 욕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그렇지 못한 것보다 선호한다. 그런데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게 하는 미래 중에 하나가 나의 죽음이다. 무엇을 원한다는 사실은, 원하는 것의 획득을 도외시하는 상황에 대해 저항할 근거를 마련해 준다. 그런데 죽음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다.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들의 획득을 도외시하는 상황이다. 만약 이와 같은 추론이 타당하다면, 어떤 것을 욕구한다는 사실 자체는 죽음을 피해야 할 이유를 마련해 준다.”<sup>19)</sup>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간과하고 있는 두 가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하나는 죽음이 욕구 실현의 가능성을 파괴한다고 했을 때, 욕구하지 않는 존재의 실체에 대한 파괴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패배감, 좌절감, 실현 불가능성, 혹은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분리, 고통 등과 같이 우리가 욕구하고자 하지 않고 오히려 욕구하기를 거부하는 사실들에 대한 파괴 역시 가능하다. 이런 문제는 현행의 안락사와 존엄사에 관

18) Robert C. Solomon(1998), "Death Fetishism, Morbid Solipsism", *Death and philosophy*, 170쪽 참조.

19) 버나드 윌리엄즈(2006), 「매크로폴로스의 경우 ; 죽지 않음의 지루함에 대한 고찰」, 『사회윤리의 제문제』, 478쪽.

한 논쟁의 주요 근거가 되는 고통스러운 삶의 지속에 대한 윤리적 논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솔로몬(Robert C. Solomon)과 버나드 윌리엄즈(Bernard Williams)가 언급하는 욕구를 죽어감의 과정, 죽어감의 시간을 파괴되는 욕구로 해석했을 때 이는 선함과 악함의 복합적인 욕구들까지 포섭된다. 즉, 죽어가는 과정에서 파괴되는 욕구는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파멸이라는 점에서 선한 욕구의 파괴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때의 죽음은 죽어감(dying)으로 보아야 하고, 죽어감은 악으로 욕구를 파괴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분명한 것은 살아있음이 선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죽어감(dying)은 악의 실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 4. 안락사, 존엄사, 미학적 안락사

##### 1) 안락사와 죽어감

죽어감에 대한 개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대의 자연적 죽음에 대한 이념과 상치된다. 그도 그럴 것이 안락사에 대한 의미는 고대와 현대에 다르게 차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 죽음과 죽어감을 분리하여 설명하려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피상적인 논의를 넘어서 죽어감에 대한 논의로 진전해야 하고 현대인에게 문제시되는 죽음은 죽어감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같은 논점에서 생명 윤리의 논점에서 정의한 안락사의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대의 안락사와 현대에서 차용하는 안락사의 의미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고대에 안락사는 심각한 고통이 없는 ‘좋은 죽음(good death)’를 의미했다. 오늘날은 더 이상 원래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보다 오히려 병의 괴로움(suffering)에 의한 의학적인 어떤 조정 혹은

최종적인 고통(torment)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안락사에 대한 현대의 이해는 장기적인 종결하게 하려는 목적을 위해 혹은 환자, 가족 혹은 사회에 너무 무거운 짐을 부과하는 극심한 괴로움을 위한 자비로운 죽음(mercy killing)에 가깝다. 그러므로, 그것이 외연의 현대적 용어인 안락사는 유용화 된 방법들로 그것의 한정된 성격을 갖는다.”<sup>20)</sup>

현대적 의미의 안락사는 단순히 개인의 편안한 죽음의 의미를 의미하는 고대적 의미를 상실했다. 고대의 의미가 ‘좋은 죽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현대적 의미의 안락사는 본질적으로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하는 죽음이다. 이렇게 볼 때 앞서 살펴보았던 논의에서 등장하는 죽어감(dying)의 논점이 현대적 의미의 안락사에 부합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생명 윤리에서 논의하는 안락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분류는 다음의 4가지 방식을 따른다.<sup>21)</sup>

-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란 환자의 죽음을 야기하려 시도하는 다른 사람에 의한 행위를 나타낸다. 그리고 예를 들어 평상시의 진통제의 복용보다 더 많은 양을 공급하는 것을 수반할 수 있다.
-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란 일반적으로 삶을 유지시키는 치료를 거두거나 우선 첫째로 수단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것에 의해 어떤 사람을 죽게 놔두는 행위를 나타낸다.
- 자발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란 책임자의 사전동의를 충분히 포함시킨 안락사를 말한다.
- 비자발적 안락사(Non-voluntary)란 사전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예를 들어, 유아, 무의식이거나 노쇠한 사람) 혹은 원하지 않거나 원함을 알 수 없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비자발적 안락사는 죽임의 행위이고 죽도록 사람의 동의 없이 자격이 있는 환자의 죽음을 허용하는 행위이다.

20) Irina Pollard(2009), *Bioscience Eth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40쪽.

21) Irina Pollard, *Bioscience Ethics*, 141쪽 참조.

2) 존엄한 죽음에 관한 윤리적 의문

2016년에 제정되고 두 차례 서로 다른 정부의 수정을 거듭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비자발적 안락사와 자발적 안락사의 모델이 혼합되어 있다. 기본적으로는 연명치료의 거부를 의미하고, 말기 암과 폐질환, 후천성 면역 결핍과 같은 불치병 상태에서 죽음에 임박하였을 때 생명 연장을 거부한다는 환자 본인의 사전 동의서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걸쳐 생명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sup>22)</sup>, 본인의 동의 의사는 확인되지 않지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과 담당의사, 전문인 1명의 확인을 통해 의해 결정되고, 성인인 경우 온 가족의 동의를 얻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의 확인을 통해 시행될 수 있다.<sup>23)</sup> 그런데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구현의 기회라는 의미에서 이 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다음과 같이 의미 연원을 기술한다.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24)</sup>

이 법의 주요 골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자기 결정권’이고 ‘존엄과 가치’에 이바지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또 안락사라는 표현이 다소 죽

22) <http://www.law.go.kr/LSW/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정과 개정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 할 수 있다.

제17조(환자의 의사 확인)

23) 제18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24) 제1조(목적)

음을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기에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고, 인간의 존엄에 관한 윤리적 입장을 고려하여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관한 논의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소위 존엄사법이라 불리는 연명의료중단 결정법의 주요 골자는 죽음에 대한 주체적 선택과 죽을 권리의 행사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제정한 법률의 의미와 다르게 이 법에서 논하고 있는 제정 세칙들 어디에도 무엇이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죽음이며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 또 자기 결정권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행정적인 규칙만을 내세우고 있다.

나는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연명의료중단 결정법의 목적을 전면에 부각하는 존엄사라는 표현은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주체의 행위라는 의미를 전면에 부각하여 이것이 마치 존엄한 죽음을 행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죽음에 관한 다른 방식의 미화, 즉 자율과 존엄을 실현한 죽음이라는 미화를 불러올 수 있기에 신중하게 고찰해야 할 문제이다. 안락사라는 표현에 숨겨진 편안한 죽음 혹은 좋은 죽음의 표현이 개인이 경험하는 죽음의 안식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라면 존엄사는 그것이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선을 이바지하는 고결한 선택, 즉 윤리적 선택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관점에서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마치 윤리적 존엄, 자기 가치를 실현하는 척도인 듯한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한 타자 배려적 선택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교양이 있는 현대인이라면 자신의 삶에 대한 고찰과 반추를 통해, 또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어감에 의미를 고찰할 것이고, ‘존엄’이라는 표현이 주는 도덕적 뉘앙스를 파악하지 못할 리 만무하다. 이런 논점에서 나는 과연 정부가 소위 ‘존엄사’라는 의미로 활용되고 있는 이 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적인 문제들은 대부분 이와 관련이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연명치료자체에 대한 거부, 완화치료로의 전환, 마지막으로 개선치료를 거부하고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호스피스 방식을 택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 접하는 소위 존엄사법은 첫 번째를 주된 경우로 받아들이고 있고, 심지어 이 법에 세칙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는 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 결정권의 범주를 왜곡하거나 축소하여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세칙들을 살펴보면 주목해야 할 다른 문제들도 있다. 개인의 주체적 선택이라는 표현과 다르게 정부의 허가과 적극적인 개입을 허용하는 항목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호스피스 시설에 관한 모든 조직과 관리는 복지부 장관이 일방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허용하는 부분, 구체적인 존엄사에 해당하는 병명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부분, 의료기관과 호스피스 기관에 대한 인증을 대통령령으로 지목하는 부분들이 그러하다.

실제로 세칙들을 세세히 살펴보면 이 법령에 대한 허가과 조직의 권한은 복지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집중되며 그것에 대한 책임은 의사와 죽음을 선택한 개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가진다. 나는 이런 법령의 구조가 대통령 중심제를 따르는 국가의 질서상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다루는 절차적 과정에서 통제하는 권력 주체와 책임을 도맡아야 하는 주체가 상이하다는 점은 분명한 모순이 있기에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3) 미학적 안락사에 관한 논의와 그 이후

2016 법제 공포 후 같은 해 발표된 「안락사와 존엄사, 그리고 웰다잉

법』에서 이 논문의 필자는 존엄사법이 가지는 한계와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현행 존엄사법, 일명 웰다잉법은 안락사 대상자의 임종기 시간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의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다운 죽음’을 온전히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안락사 대상자의 동의 방식을 지나치게 느슨하게 규정함으로써 안락사 시행의 자의성과 임의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sup>25)</sup>

이 논문에서 지적하는 바는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이렇다.

첫째, 죽음의 시간에 대한 계산을 통해 죽음의 자기 결정권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가능하려면 남아있는 시간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고통과 자기 결정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sup>26)</sup>

둘째, 성년과 미성년 연고자가 있는 자와 없는 자와 같은 형식적 구별 통해 기준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동의하는 바로 그 자신의 충분한 합리적 숙고를 통해 도달한 결과인가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만 오로지 죽을 권리와 죽음의 자기 결정권 대한 윤리적 평가가 가능하다.<sup>27)</sup>

셋째, 비자발적 안락사에 해당하는 경우, 보다 의사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않을 경우, 모호하게 동일시하여 악용될 소지가 있다.<sup>28)</sup>

이와 유사한 논점에서 비판적 논조를 보인 법적인 논의들 역시 같은

---

25) 맹주만(2016), 「안락사와 존엄사, 그리고 웰다잉법」, 『철학탐구』 44, 중앙철학 연구소, 188쪽.

26) 맹주만, 「안락사와 존엄사, 그리고 웰다잉법」, 199쪽 참조.

27) 맹주만, 「안락사와 존엄사, 그리고 웰다잉법」, 201쪽 참조.

28) 맹주만, 「안락사와 존엄사, 그리고 웰다잉법」, 200쪽 참조.

문제들을 우려하였고 그에 관한 연구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법적인 쟁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논의하는 대상과 기간에 관한 개념의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석배(2017)는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지정하는 임종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의료라는 규정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의사가 완치한 환자를 퇴원시켜야 하는 것과 같이 불치의 임종환자에게 치료를 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을 유비적으로 해석하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현실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지 않기에 애초에 규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는 규정되어야 할 환자의 범위는 “임종환자”가 아니라 “PVS(Persistent Vegetative State, Wachkoma: Apallisches Syndrom)” 환자라고 강조한다.<sup>29)</sup>

이한주(2019)는 임종의 의미가 모호하며 말기환자, 임종과정과 같은 추상적인 표현들이 혼돈을 야기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sup>30)</sup> 김천수(2019)는 이한주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임종과정의 환자와 말기환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여 의사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그럴 경우 모든 책임의 문제가 의사의 결정, 즉 임종 시기에 대한 의사의 판단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런 이유로 절차적 과정에 대한 다른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sup>31)</sup>

29) 이석배(2017),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과 현실적용에서 쟁점과 과제」, 『법학논총』 29,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321쪽 참조.

30) “임종은 죽음에 임박한 시점이므로 임종까지 수개월이 남은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수개월’은 대단히 추상적인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를 말기환자로,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볼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질환에 따라서는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면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말기 또는 임종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한주(2019), 「연명의료결정법 제정과정과 문제점」, 『인격주의 생명윤리』 10,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176-177쪽.

31) 김천수(2019),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성균관법학』 31, 성균관

두 번째 법적 문제는 미성년과 무연고자의 대리 결정에 관한 세칙이다. 김천수(2019)는 연명의료결정법의 경우 판단의 기준을 행위능력이 아닌 결정능력으로 보아야 하며 그렇기에 연명의사에 대한 결정은 본인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자연사를 향한 환자 본인의 뜻을 존중하여야 하는 데에 가족의 역할은 본인의 평소 언행을 진술하는 것에서 그쳐야 한다. 그런데 대행결정에까지 연명의료결정법이 나아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sup>32)</sup>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판단이 개입해선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이석배(2019)는 “비록 의학적 또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 이익에 반하는 비합리적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결정주체가 스스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결정한 이상 그 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sup>33)</sup>고 주장한다. 그는 미성년의 경우, 나이를 기준으로 획일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죽음을 결정하는 행위는 오로지 자기 결정권에 의거해야 한다고 논한다.

이러한 법적 논쟁은 2016년 미학적 안락사에 등장하는 문제 제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런 이유로 이 논문은 2016년에 현행법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미학적 안락사’의 기준을 다시금 살펴보고자 한다. ‘미학적 안락사’는 다소 모순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의 필자는 안락사의 윤리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삶을 하나의 미적 구성물로 보았을 때 주체가 선택하는 죽음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모순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학적 안락사는 윤리적 안락사란 존재할 수 없으나 인간의 생애에 포함된 내적 가치를 바탕으로 허용할 수

---

대학교 법학연구원, 264-265쪽.

32) 김천수,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297쪽.

33) 이석배(2019), 「인간의 존엄, 생명권 그리고 연명의료」, 『형사법연구』 31, 한국형사법학회, 138쪽.

있는 안락사는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런 논점에서 논의를 전환하여 미학적 안락사를 통해 제시하는 대안적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학적 안락사는 본인의 직접적인 동의를 근본조건으로 한다.

둘째, 미학적 안락사는 기대 생존 기간을 단순히 물리적 시간에 한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윤리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죽음이라면 그것은 특정된 기간의 제약 없이 고통에 따라 실행하는 안락사도 가능해야 한다.

셋째, 안락사는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한 죽음이므로 자기 죽음의 정당성이 제3자에 의해서 승인되어야 하지만 이때 엄격한 기준과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자격 있는 사람이 안락사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의사 조력자살이 자신이 하고 싶은 죽음 방식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sup>34)</sup>

미학적 안락사는 현행법에서 제시하는 죽음의 기준이 사실상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객관성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 판별의 기준을 다르게 세우고 있다. 죽음이 ‘존엄사’라는 윤리적 이름으로 논의되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윤리적 기준들을 제공해야 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점은 법적인 논의에서도 같은 논조로 조망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는 위의 논문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같은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재점화시키고자 한다. 왜냐하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2016년 이후 여러차례 개정되었고 이때 새롭게 진전된 사안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연 법 개정에 고려된 문제가 무엇이고 법 개정을 통해 얻고

---

34) 맹주만, 「안락사와 존엄사, 그리고 웰다잉법」, 191-194쪽 참조.

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법률의 개정된 세칙들을 살펴보겠다. 위의 법령은 세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2017년 박근혜 정부 때 개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 2017. 8. 4.] [법률 제14013호, 2016. 2. 3.,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연명의료에 대한 기본원칙, 연명의료결정의 관리 체계, 연명의료의 결정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암환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의 말기 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하여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제1조)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다. 연명의료결정의 관리 체계(제9조부터 제14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둔.

2)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및 내용, 등록·보관 및 변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및 내용, 등록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연명의료결정의 이행(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 1)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여야 함.
- 2)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고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로 봄.
- 3)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고 담당의사 등의 확인을 거친 때에는 이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로 봄.
- 4)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시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됨. <법제처 제공>

위의 개정안에서 보이는 특징은 세 가지이다.

첫째,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자기 결정을 통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게 한다.

둘째, 모든 관리 자료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는 경우에도 가족의 합의와 의사의 동의하에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령은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수정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 2018. 3. 27.] [법률 제15542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심폐소생술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 또는 임종기에만 작성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환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고,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이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등이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병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 정착 이전에 이러한 벌칙 부과 가능성은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의 확대, 호스피스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절차 완화, 대상이 아닌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의료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시행 2019. 3. 28.] [법률 제15912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일 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현행법상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의 배우자 및 모든 직계혈족을 의미하며 직계혈족의 수가 많은 고령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를 진행하는 의료진이 모든 직계혈족과 연락해 연명의료 중단 관련 동의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또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 이외의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임.

이에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준비속 등으로 조정해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고 의료현실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법제처 제공>

2018년과 2019년에 수정한 내용은 법령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두 가지 주요 내용이 수정되었는데 하나는 의사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법적제재 형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자발적 안락사의 경우 합의할 가족의 범주를 축소 시켰다는 점이다. 법령의 수정안들을 살펴보면 안락사에 대한 기준이 확대되었으나 미학적 안락사에서 주장하듯이 고통에 따른 기준에 의해 안락사를 결정해야 한다거나 나이와 삶에 가치에 대한 고찰 능력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문제와 같은 윤리적 기준에 대한 재검토는 없다. 오히려 앞서 확인한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거나 악용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을 희석하여 실행을 수월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개정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정부가 행정적인 시행 자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제 장치들을 더 느슨하게 만들고 있고 책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무게를 줄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즉, 안락사와 관련된 현행법의 수정 방향은 안락사 시행에 고려해야 할 규범적 조건들을 윤리적 논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완화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실용적 입장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수정된 세칙들은 행정적 편이를 위해 책임 소재를 줄이고 집행을 수월하게 하는 절차를 늘인 결과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방식의 수정 과정이 단지 순수하게 법적인 문제만을 배경으로 한다고 보지 않는다. 이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탁할 때 등장하는 전형적인 통치술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는 현대자본주의사회에 존립의 기초가 되는 생명관리정치와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런 이유에서 이 문제를 정치적 의미에서 재조명하고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생명 정치에 관한 논의에 기대어 이 문제를 다시 보기로 한다.

### 5. 생명관리정치에서 죽음관리정치로

미셸 푸코의 1976에서 1979년까지의 강의는 국가 권력이 생명을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생명 관리 정치는 자유주의를 지탱하는 통치 테크놀로지(technology of government)라는 분석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sup>35)</sup> “시민사회는 철학적 이념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 시민사회는 통치테크놀로지적(de technologie gouvernementale)개념입니다. 아니, 오히려 통치테크놀로지의 상관물(le corrélatif d'une technologie de gouvernement), 즉 생산과 교환절차로서의 경제에 대해서 법적인 방식으로 관여하는 합리적 측정이 이뤄져야 하는 통치테크놀로지의 상관물입니다.”<sup>36)</sup> 그는 호모 에코노미쿠스(L' homo œconomicus)와 시민사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시민사회에 이념적인 문제들은 모두 경제적인 문제들과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시민사회는 경제적 인간이라는

35) 푸코는 1975-1976년 강의에서 자유주의와 사회 구성에 관한 분석을 주된 주제로 삼는다. 자유주의 사회의 특성을 분석하는 내용은 다음의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M. Foucault(1997), *Il faut défendre la société :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75- 1976*(1997), Seuil: 한역판, 미셸 푸코((1998)),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동문선. 1978-1979년에는 자유주의 사회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생명정치에 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전개한다. 이 논의는 다음의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M. Foucault(2004), *Naissance de la Biopolitique*, seuil: 한역판, 미셸 푸코(2012),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난장. 이 글의 주된 논의에 사용된 푸코의 인용문은 한역판 번역을 차용한다. 그러나 해석의 맥락이 다를 때 의미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기술하겠다.

36) 미셸 푸코(2012),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405쪽. *Naissance de la Biopolitique* (2004), 299-300쪽.

전제 없이 존속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시민사회는 동일한 총체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 요컨대 그것들은 자유주의적 통치테크놀로지 총체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sup>37)</sup>

푸코는 권력은 무엇을 억압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속적인 작동을 통해 활성화되지 못한다면 그 의미를 상실한다고 본다. 이러한 권력의 성격은 시대마다 다르게 등장하고 이에 따른 통치의 기술 또한 시대마다 다르게 채택된다. 권력의 실행방식이 시대마다 다르게 등장하는 이유는 각 시대에 예측되는 시대정신이 다르기 때문이고 사회를 구성하는 질료들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논점에서 현대 사회의 권력 실행의 양상은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 현대의 권력은 왕정시대의 권력처럼 그 자체로 권위적이거나 폭발적인 힘의 상징을 드러내지 않는다. 현대의 권력은 억압적인 양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미세하게 작동되는 상호적 힘의 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동한다. 현대의 권력은 더는 왕정 시대의 전쟁과 폭압에 기대지 않고 주체의 예측화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것이다. 푸코는 신체 규율 권력에서 생명 규율 권력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권력 기술을 확인하면서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시각에서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분석한다.

“새롭게 정착한 기술은 다수의 인간을 상대하기는 하되, 그것이 개체로 요약된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이 다수가 모든 생명 고유의 과정인 출생과 사망·출산·질병 등 인류 전체의 과정에 영향받는 글로벌한 전체를 형성한다는 점에서이다.”<sup>38)</sup>

푸코는 출산율과 사망률, 평균 수명에 관한 분석을 하는 것이 생명 정치의 중심이라 보았다. 이는 더 나아가 전염병과 풍토병에 관한 공포와

37) 미셸 푸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405쪽: *Naissance de la Biopolitique*, 300쪽.

38) 미셸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280-281쪽.

더불어 특정 인종이 갖는 질병들에 대한 분석과 치사율 연구를 통해 질병을 인구현상으로 본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생명 관리 정치는 다양한 방식의 자본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권력 구조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의 탄생과 보건 교육의 활성화를 비롯하여 빈민구제의 문제 저축과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메카니즘을 형성한다는 것이다.<sup>39)</sup> 더 나아가 푸코는 18세기 후반부터 권력의 통제 구조가 생명 중심을 이루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한 권력적 사건들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한다. 죽음은 철저히 사적 영역으로 전환되면서 죽음에 대한 의식과 의미에 몰입하던 권력적 방식은 사라지고 오직 사망률이라는 통계수치로만 전락하였다는 것이다.

의료보험과 노후제도, 보건제도와 같은 제도화들은 생물학적 방식의 생명 탄생의 메커니즘을 만들었고 이는 다시금 의학의 권력을 부여한다. “의학은 개인의 육체와 인구, 그리고 유기체와 생물학적 과정 등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권력이며, 따라서 규율적이며 조절적인 효과를 갖게 되었다.”<sup>40)</sup> 19세기의 권력은 생명을 책임지고 안전한 사회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부터 그 권력을 유지하고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삶의 권리와 죽음의 권리에 대한 행사는 권력과의 관계로부터 나오고 그것이 비대칭성을 활용하여 권력은 권리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권리들을 생성하고 변형시킨다<sup>41)</sup> 이런 주장은 자유주의 사회의 권력 메커니즘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물음과 직결된다.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이는 공리주의적 유용성에 입각한 결과들을 산출한다.

푸코는 18세기말에 등장하는 상호 협력의 두 가지 양상을 분석한다. 하나는 “육체-유기체-규율-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인구-생물학적 과정-조절 메커니즘”이다.<sup>42)</sup> 이 중 두 번째 제도는 국가가 생명의 관리, 즉 생물

39) 미셸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282쪽 참조.

40) 미셸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290-291쪽.

41) 미셸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277-282쪽 참조.

적 조절을 통해 통치의 기술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19세기에 증가하였던 의료기관, 구호기금, 보험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국가의 제도 하에 포섭되게 된 연유를 통치술의 일환으로 해석한다. 이는 일정한 규율 메커니즘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고 사회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sup>42)</sup> 자유는 일종의 소비재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자유주의의 통치술은 끝없는 자유로울 수 있는 조건들을 형식화한다. 이때 권력은 자유에 대한 생산과 파괴, 재생산을 반복하면서 권력 자체에 내포된 긴장을 방법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나는 현행법이 수정되고 언론에서 연일 연명치료 거부에 관한 담론을 활성화하려는 이유가 바로 자본과 자유주의의 결탁을 통해 자유에 관한 다른 환영을 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존엄한 죽음은 ‘자기 결정권’, 즉 죽을 권리에 관한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에 기인한다. 여기서 내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살 권리’는 권리라 명명할 수 있지만 ‘죽을 권리’는 권리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 그것에 내포된 의미를 받아들일 수는 있다. 그러나 죽을 권리라는 용어 자체는 죽음에 대한 윤리적 고찰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죽음은 권리상실을 통해 상실과 파괴라는 두 가지 결과를 낳는다. 그런 이유에서 무엇에 관한 권리라고 하였을 때 그 권리는 나의 것으로 온전한 어떤 상태를 소유하는 것을 목적하지 파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죽을 권리라는 표현은 권리의 정의에 부합하기보다는 죽을 자유라는 의미에 더 부합하다. 정확하게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분명하게는 자신의 결정하는 권리라기보다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자유를 행사하는 권리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또 다른 자유 행사의 권한을 행위 주체에게 부여하여 죽음을 결정할 가능성의 자유를 담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2) 미셸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288쪽.

43) 미셸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288-290쪽 참조.

이렇게 볼 때, 나는 존엄사라는 윤리적 언어로 안락사를 표현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죽음에 대한 권리가 죽음에 대한 자유로운 권한 개념을 양산하여 그러한 개념을 다시금 확산하는 것과 같은 환상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본다. 자유에 대한 갈망이 생명에서 죽음으로 치환되었으며, 마치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죽어감의 과정에도 자유를 부여하는 것과 같이 생명에 대한 권리를 정부의 권력을 통해 조절하고 있다. 생명을 관리하려는 정치 권력은 죽음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자유를 제공하는 새로운 생산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홍지형(2020)은 실제 종양환자들에게 연명치료에 관한 설문을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통해 연명치료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지적한다. 그는 경제적 상황, 가족, 사보험의 소유, 병증의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며 자기 결정과 대리 결정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sup>44)</sup> 특히 완화치료와 호스피스 시설을 선택하는 경우는 교육 수준 및 경제적 요인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또 그는 현실적인 문제들, 의사들에게는 윤리나 생명의 존엄 문제보다는 의료수가나 설비들과 물질적 자원이 결정하는데 더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45)</sup> 그는

- 
- 44)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단 변량 분석에서는 환자가 진단 나이 65세 이하일수록, 직업이 있을수록, 동반 거주자가 있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자가 소유의 주거형태일수록, 사보험이 있을수록, 혈액종양내과 및 완화의학과 환자일수록, 악성종양으로 진단받은 환자일수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율이 높았다. 다변량 분석에서는 환자가 혈액종양내과, 완화의학과 소속일수록, 악성종양일수록, 자가 소유주택 거주자일수록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요인이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홍지형(2020), 「연명의료결정법과 자기결정권 강화의 실제」, 『인격주의 생명윤리』 10,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131쪽.
- 45) “환자가 결정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의사의 진료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자원 분배의 문제가 있다. 실제로 의료진에게 치료적 행위에 대한 수가보다 생애 말기 치료에 대한 논의에 대한 보상이 취약한 실정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수행 이후 연명의료관리 및 협진에 대한 수가가 책정되어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인 수준에는 아직 다다르지 못하였

현실적인 제도 정비의 문제들이 현장에서 유발하는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호스피스 완화치료에 필요한 의료 자원과 의료 시스템적인 문제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46)</sup> 이와같이 현장에서의 문제들은 결국 앞쪽에서 보았던 호스피스 시설의 허가와 활용에 관한 모든 결정권이 복지부장관과 대통령령에 국한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드러낸다. 모든 선택의 권한이 정부 권력에 집중되어 있고 이때 정부는 호스피스 시설에 대한 확정 및 물리적 시설과 설비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동시에 건강보험과 보험 수가에 대한 조적을 새롭게 개편할 수 있는 권력 역시 쥔다.

이러한 논점에서 다시 보자면 존엄한 죽음은 윤리적 의미나 법적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기관과 권력기관이 이익의 합치를 이루는 지점에 그 운명이 달려있다. 존엄한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율적으로 검토할 충분한 숙고의 과정보다 사회·경제적 장치들의 상호 작용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맡기려 하는 것이다. 현행법의 제정과 수정의 절차는 생명관리정치에서 죽음관리정치로 통치술의 영역을 확장하며 권력이 주는 긴장을 조절하며 새로운 이익의 논점으로 문제를 전환하고 있다.

위의 문제들을 고려하건대, 대한민국의 존엄사법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법제화되었고 무엇을 위해 절차들을 만들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심지어 그것이 무연고 상태의 주체가 죽을 순간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시간을 연장하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법은 이 역시 자기 결정권이라 존중할 수 있는 공정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공리의 관점에서 죽음의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 자기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죽음 대면하는 주체로서 자

---

다. 이러한 물질적 자원의 부족 및 의료진의 보상체계의 부족이 결국 연명의료 논의의 회피를 초래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홍지형, 「연명의료결정법과 자기결정권 강화의 실제」, 133쪽.

46) 홍지형, 「연명의료결정법과 자기결정권 강화의 실제」, 134쪽 참조.

기 삶을 결정하는 옳은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으로부터 존엄사의 문제는 논의되어야 한다.

## 6. 나가면서

죽음이 아닌 죽어감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정당한 권리라고 알리는데 다양한 매체들이 활용되고 있다. 언론은 존엄사의 문제를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의미 전달과 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 없이 경제적인 문제에 따른 합리적 선택으로 또 극한의 고통을 포기할 권리로 부각하여 발표하고 있다.

나는 앞에 논의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존엄사의 문제를 다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존엄사에 대한 고려는 언론의 보도와 자기 공동체의 안위, 자유와 권리라는 모호한 판단 기준을 앞세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나의 삶에 대한 합리적 숙고에 기반하여야 한다. 또 국가시스템 하에 법적 장치들에 귀속된 법령은 정부에게 있지만,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결과적 책임은 오로지 그 선택에 주체에게 귀결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법이 가진 이면을 잘 들여다보아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간병과 치매, 호스피스에 관한 보험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종신생명보험을 팔던 보험사가 이제는 죽어감을 개념화하여 판매할 수 있는 보험들을 생산하고 있다. 20세기를 지배했던 생명관리정치는 이제는 죽어감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려 꿈틀대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삶과 죽음에 관한 윤리적 논의를 자본주의 정치의 맥락에 따라 자유와 권리라는 담론으로 재생산하고, 그것을 다시 확산하여 사회 전반의 인식에 스며들도록 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권력의 실용적 메커니즘은 우리의 욕망에 따라 직접적인 드러남을 최소화하며 새로운 통치술의 방책을 모색하게 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김천수(2019),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성균관법학』 31,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맹주만(2015), 「칸트와 미학적 자살」, 『칸트연구』 36, 한국칸트학회.
- \_\_\_\_\_ (2016), 「안락사와 존엄사, 그리고 웰다잉법」, 『철학탐구』 44, 중앙철학 연구소.
- 미셸 푸코(1998),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동문선.
- \_\_\_\_\_ (2012), 『생명관리장치의 탄생』, 난장.
- 박영선(2007), 「셸링의 인간학과 사후 영혼론」, 『철학탐구』 21, 중앙철학연구소.
- 세네카(2019), 『세네카의 대화: 인생에 관하여』, 까치.
- 신동일(2009), 「존엄사에 대한 형법적 물음」, 『형사정책연구』 7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앤소니 A. 룡(2000), 『헬레니즘 철학』, 서광사.
- 이한주(2019), 「연명의료결정법 제정과정과 문제점」, 『인권법평론』 22,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임미원(2008), 「안락사 문제의 법철학적 고찰」, 『윤리연구』 71, 한국윤리학회.
- 제임스 레이첼즈외(2006), 『사회윤리의 제문제』, 서광사.
- 플라톤(2003), 『파이돈』, 을유 문화사.
- 피터싱어(2003), 『삶과 죽음』, 철학과 현실사.
- 이석배, 「독일 테프테너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의료법학』 9, 대한의료법학회, 2008.
- \_\_\_\_\_,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과 현실적용에서 쟁점과 과제」, 『법학논총』 29,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_\_\_\_\_, 「인간의 존엄, 생명권 그리고 연명의료」, 『형사법연구』 31, 한국형사법학회.

- 홍지형(2020), 「연명의료결정법과 자기결정권 강화의 실제」, 『인격주의 생명 윤리』 10,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 Andrew Cooper(2016), “a Good death?”,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Vol. 30, Published online.
- Bethne Hart, Peter Sainsbury(1998), Stephanie Short, "whose dying? A sociological critique of the 'good death'", *Mortality* Vol. 3, Taylor&Francis.
- Suhita Chopra Chatterjee(2004), "Understanding the Experiential World of The Dying : Limits to Sociological Research", *Omega journal of death and dying* Vol. 48, Baywood.
- Foucault(1997), *Il faut defendre la societe : cours au College de France, 1975-1976*, Seuil.
- \_\_\_\_\_, (2004), *Naissance de la Biopolitique*, Seuil.
- Irina Pollard(2009), *Bioscience Eth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 Rachels(1985), *The end of life*, Oxford univ.
- J.E Malpas, Robert C. Solomon(1998), *Death and philosophy*, Routledge London and NewYork.
- Thomas Nagel(1979), *Mortal Questions*, Cambridge Univ.
- Vincent Barry(2007), *Philosophical Thinking about Death and Dying*, Thomson Wadsworth.
- <http://www.law.go.kr/LSW/main.html>

## **Transforming the Biopolitics into the Politics for dying -the problematization of Well-dying Law-**

Kim, Bun-Sun (Chung-Ang univ.)

The study is designed to take into account the ethical problems which the conceptual issue of death with dignity has and then shed light on the problems hidden in the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the laws on death with dignity from the perspective of Foucault's biopolitics. Besides,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for revising the "the patient's decision to hospice, palliative care and dying process act law(It is so-called well-dying law)" and then argues that the well-dying law takes a utilitarian position rather than the ethical position. To access these issues, the main concepts of the law on death with dignity will be researched, and the difference in the concept between the death and the dying will be analyzed. Based on these, the establishment and revision processes for the well-dying law are analyzed. Moreover, the problems of well-dying law are specified, relying on the discussions of the aesthetic Euthanasia. In conclusion, this study will show that the ultimate problems of the well-dying law are related to the mechanism of free production for the existence of liberalism and capitalism. Furthermore, This article finds out what is the essential problem to be considered in terms of the right selection for the dying.

**Key words:** Well-dying law, Euthanasia, aesthetic Euthanasia, the Biopolitics,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ying.

생명관리정치에서 죽음관리정치로 / 김분선

김분선 e-mail: qkqh49@hanmail.net

투 고 일	2020년 01월 28일
심 사 일	2020년 02월 18일
계재확정	2020년 02월 18일